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7년 10월 18일

나. 발 의 자 : 김근아, 김복자, 김상조, 김인배, 김재상
김태근, 박교상, 박세진, 안장환, 안주찬
윤종호, 정하영, 한성희, 허 복(14명)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10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10월 23일

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김근아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,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등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해당 조문에 반영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조례상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(안 제5조)

- 현행 : 폐질 등급 ⇒ 개정 : 장애등급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양 회 규

□ 본 조례안은

○ ‘폐질’, ‘불구’, ‘정신박약’, ‘정신병자’ 등의 용어는 장애를 비하하는 용어로서 지난 2010. 1. 1일 대통령령 제2489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및 행정안전부령 제125호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한글정비 순화계획에 따라 ‘폐질’을 ‘장애’로 수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장애인을 모욕하는 비하 표현 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짐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